

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. 5. 23 선고 2017가단313 판결 [건물등 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 2017. 4. 25.

판결 선고 2017. 5. 23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 - 가.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의 별지 도면 표시 ①, ②, ③, ④, ⑤, 6, 7, 8,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(가)부분 지상 시멘트 블록조 슬레이트 및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 17.3㎡를 철거하고,
 - 나. 같은 도면 표시 ①, ②, 5, 4, 5, 6,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나)부분 지상 시멘트 블록조 슬레이트 지붕 단층 주택 51.9㎡를 철거하고,
 - 다. 같은 도면 표시 ①, ②, ③, ④,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다)부분 지상 목조 슬레이트 지붕 단층 창고 5.6㎡를 철거하고,
 - 라.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,
 - 마. 2016. 12. 28.부터 위 라.항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73,935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'청구원인' 기재와 같다.(다만 청구원인 2.항 4열 '①, ②, ③, ④, ⑤, ⑥, ⑦, ⑧, ①'을 '①, ②, ⑤, ④, ⑤, ⑥, ①'로 정정한다.)
2.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)

판사나상훈

별지